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 및 2015.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조)
 - 당초 : 수급자 → 변경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- 당초 : 의사상가족자 → 변경 : 의사자가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임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'수급자' 기준을 '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'로,
- '의사상자가족'을 '의사자가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'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